

한국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박장규* · 김남중**

요 약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선진국의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86서울아시아게임,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호경비업체가 업무에 참여하면서 민간경호경비는 민생치안 대안으로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경비지도사신설, 교육제도개선, 신변보호업무추가 등 15차례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호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비도덕적 경호경비업무에 투입되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덩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은 영세한 업체들의 폐업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경호경비회사의 설립 허가기준이 미흡하여 신규로 법인이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 신변보호 업체들의 영역확대, 경비지도사 선임기준 변경, 전문마케터를 통한 특정고객 유치,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경호경비 회사 설립 허가요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Research of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rocess for protection in Korea Private Security

Park Jang Gyu* · Kim Nam Joong**

ABSTRAC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began after served security service for the United States army of 8 division. The industry grew up after establish private security regulation on December 31th of 1976. Early 1980's the industry was accelerated from bringing technical knowledge of developed nations rapidly. Also, private security was gotten into the spotlight by one of futurity industry instead public security after companies performed 86 Asian game and 88 Seoul Olympic successfully. Therefore, the industry became to increas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From late 1990's the private security regulations were revised fifteen times and created about education system, bodyguard, and leader of security. 3,836 private companies and 150,030 private guards had operated until 2012. However, some of companies received administrative measure, because of the companies ran immorally. The minor companies are continuously closed down from the leader's inefficient operation. Approval standard of establishment has imperfect law. Solutions of problems are to provide high quality service, to expand company affairs, to attract specific customers through efficiency expert, to change standard of leader of security guards, to establish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 through the government and to intensify requirements to establish the company.

Key words :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Industry, Private Security Regulation, Security, Bodyguard

접수일(2013년 4월 30일), 수정일(1차: 2013년 5월 24일),
계재확정일(2013년 5월 29일)

*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 사단법인 대한경호협회 전주지부

1. 서론

우리사회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됨으로써 경제규모가 팽창하고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대되었으며, 인구의 도시집중과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로 말미암아 범죄는 날로 증가하였다[8]. 범죄의 경향도 조직화, 전문화, 대형화, 무차별화, 다양화, 흉포화 되고 있어, 시민생활의 불안도 날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일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2]. 하지만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최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력은 인력·장비·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13].

우리나라도 각종 테러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이러한 치안수요의 급증과 치안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프로그램이 민간경비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국가에서는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경비 산업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또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입법을 위해 자료수집에 착수하였다. 한국전력을 비롯하여 국가중요시설 답사 및 경비 실태를 정밀히 조사·분석하는 한편, 당시 주한 미8군 시설경비용역업체들의 운영실태 및 노무관리, 장비관계 등의 제반 현황을 파악하였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외사경찰을 통해 선진국의 경비업 관련 자료도 수집하여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후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등의 국제적인 행사가 국내에 개최되어 국내 민간경비업체가 경호경비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정계 및 유명인사, 연예인, 부유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대중화되어 양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1995년 경비지도사제도 신설, 1995년 경비업법 5차 개정으로 신변보호업무추가, 2001년 경비업법 8차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 내용의 추가 등 경비업법의 제도적 정비·보완으로 한국 민간 경호경비는 양·질적 성장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팽창은 전문적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은 무리한 운영과 무분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기 시작 하였다. 또한 경호경비업체의 설립기준이 상당히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업체들이 난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허가 및 감독기관들의 업무 과중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경비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경비지도사들의 다양한 문제들이¹⁾ 속출되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또한 경호경비업체들은 택지개발관련사업, 노·사간의 대립, 개인 및 단체들의 재산 분쟁 등으로 인한 불법 및 비도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비업법 위반 행위와 폭력 및 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경호경비회사의 불법 및 비도덕적인 행위는 이미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고 있으며, 무자격자의 경비원들과 자질이 부족한 경비원들로 인해 경비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신변보호업체들의 발전과정을 통해 민간경비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변보호 업체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경비 관련통계자료 및 보도내용들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신변보호 회사들의 발전과정

신변보호업체의 탄생된 계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 이후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가 국내에 개최되어 수많은 외국 인사들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경찰이 모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자격기준의 문제, 교육의 문제, 시험의 문제 등

한국민간경호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후 1995년 12월 30일에 신변보호업무가 경비업법에 추가되면서 민간경호가 다양하게 성장하였지만, 신변보호업무가 경비업법에 추가되기 전에도 명칭은 다르지만 신변보호업체와 민간경호원이 존재하였다.²⁾

민간경호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5년 04월 18일 삼성그룹에 방문하는 크라이슬러 회장을 한국안전시스템(현 에스원)이 2박 3일간 5명의 경호원이 수행하였고, 이어 1986년 아시안게임 때에는 민간경비업체 범아공신(주)이 외국의 체육계 인사의 경호업무를 경찰과 합동으로 수행하였으며, 1998년 02월에는 한국보안공사(현 CAPS)가 서울올림픽 미국 NBC와 계약하여 경호업무를 수행하였다[4]. 따라서 실질적인 한국민간경호는 1980년대 중반부터 발달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제도적으로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보호와 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부터 밀려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으며, 누구나 신변보호업체를 세무서로부터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경호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범죄단체가 신변보호업체로 위장 활동하여 이에 종사하는 직업인을 보는 시각이 일부에서는 곱지 않게 보던 때도 있었지만, 범죄단체나 우범자들의 신변보호업체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경호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1990년대 초반 신변보호업체들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에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어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부분 개인자격으로 회사를 운용을 하고 있어, 경비업법 개정에 의한 자본금 1억원이상 법인등록, 경비지도사 채용 등의 행정적인 절차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경비업법에 준해서 업체를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6]. 그러나 일부 업체는 폐업을 결정하였지만 대부분 무허가로 경호업을 영위하다가 1997년 적발되었다.

<표 1>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에 신변보호법률이 추가되어 개정되기 전 활동했던 업체들이며, 서울에 주사무소를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폐업하였지만, 일부는 상호변경 및 법인 전환하여 현재 까지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변보호업 이외에 시설경비업 등을 추가로 허가받아 활동하고 있다.

<표 1> 경비업법 법률 개정 전 활동 경호회사

년도	회사명	위치	내용
1989	보디가드라인	서울	약 3개월 영업 후 폐업
1992	국제경호시스템	서울	법 개정 후 1996년 탐경으로 상호변경
1993	한국경호센터	서울	법 개정 후 경영악화로 1996년도 폐업
1994	안전기획	서울	법 개정 후 1997년 강한친구들로 상호변경
1994	백호기획	서울	법 개정 후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폐업
1994	한국경호경비시스템	서울	1995년 최초로 법인전환
1995	서울경호시스템	서울	법 개정 후 법인전환을 못하여 폐업
1995	웨스트코스트	서울	1996년 영업중지 후 1997년 곧 폐업

자료 : 장명진, 경호실무, (2004:36-37) 재구성[15].

1998년도 신변보호업체들은 IMF를 맞아 채무, 부도,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되며, 단계적으로 청원경찰 감축 계획 내용의 정부 발표와 기획예산처의 청원경찰제를 민간 전문 경호·경비 제도로 대체하여 연간 인건비 3천억원 감축 내용의 발표로 인해 민간경호원은 하나의 직업군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사분규현장, 각종 이권현장, 철거관련 업무에 민간경호원들이 투입되어 범죄자의 집안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1999년도 신변보호업체들은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홈페이지 개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홈페이지 등장으로 보다 편하게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2) [용역경비업체 요인경호까지 영역확대 모색]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국 민간 주요 인사들의 방한이 잦아지자 지금까지의 시설경비와 단순경비에서 용역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8].
[용역회사 경호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용역경비협회 소속 50개 용역회사 중 대형 경비업체 3, 4개사는 우리나라에 오는 주요 외국 민간 인사를 대상으로 경호업무를 다룰 것을 추진 중이다[1].

딱딱하고 경직되게만 느껴지던 직업이 일반인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마스크를 통하여 민간경호원과 신변보호업체들이 소개되었고, 신변보호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민간경호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TV홍쇼핑에 경호상품까지 등장³⁾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1995년 경비업법에 신변보호업자가 추가된 후 허가 등록된 업체는 5개에 불과했지만, 1999년도에 들어서 국내 신변보호업체는 50개에 육박하였다. 이 수치는 국내 경호업체도 '시장'과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에 힘입어 신변보호업체들은 한국경비협회 산하에 경호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민간경호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는 민간경호원이라는 직종이 직업 선호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선정되었고, 국제적인 행사 및 다양한 대규모 행사에 민간경호원이 투입되어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며, 마스크를 통해 민간경호원, 신변보호업체, 경호 관련학파들이 소개되어 경호원과 신변보호 업종이 하나의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도 신변보호업체들은 국가중요시설 경호경비업무에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의 총기휴대와 사용권에 관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한 이후 채용조건도 한층 엄격해졌다.

2002년에 이르러 <표 2>와 같이 전국적으로 경호경비업체가 2,051개(경찰청 통계)가 설립되어 활동하였으며, 월드컵 특수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신변보호업체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업체가 설립되어 향후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대안으로 경호 인력의 해외 수출이라는 해결책이 모색되기도 했다. 또한 '휴대폰경호서비스'³⁾의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시도 되었지만 일부 업체에서만 운영 하였으며, 기계경비회사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는 못

했다.

2003년에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납치,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신변보호에 대한 불안 심리와 경찰 치안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여성들의 출·퇴근 시 관련된 경호업무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관련된 경호업무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건설업의 호황과 판교 신도시 공공주택 분양으로 인해 신변보호업체들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경호원을 투입하여 경호업무 외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다.

2004년에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후 외국인을 겨냥한 테러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라크에 한국의 신변보호업체들이 진출하여 이라크 현지내국인, 외국인,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호업무를 실시하여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투입되는 경호원들의 자격을 특수부대 출신자 위주로 제한하여 선발 하였으며, 신변보호업체들은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였지만 이라크에 투입되는 경호원들의 생명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어 투입된 업체들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경호업무 진행이 무한정 미뤄지기도 했다.

2005년에는 경호경비업체들의 난립과 경호 관련 용역계약이 최저입찰 계약방식으로 인해 경호산업이 발전하는 저해요인으로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신변보호업체들은 기존의 아웃소싱회사의 업무의 형태에 경호 운전업무를 추가하여 새로운 방식의 경호 관련 용역 업무들을 시작하였고, 일부 업체는 신변보호업무 외에 주택관리업무, 청소용역업무, 시설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등을 추가하여 영세한 경호업을 극복하기위해 노력을 하였다.

2006년부터는 다양한 경호경비 관련업을 추가하여 활동하는 업체들은 침체된 국내경비업계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신변보호업무를 위주로 하는 일부 업체들은 5월 31일 지방선거 때 잠시 특수를 얻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경영의 어려움과 경비업법 강화로 인해 폐업을 하였고, 2008년까지 일부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신변보호 업체들이 신규로 설립되는 현상이 반복되어졌으며, 경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대학생들은 신변보호업무 위주의 업체 직원으로는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급여를 보장받을 수 없어 대부분 보안 요원 또는 경비원의 직업군을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

3) 이서비스는 위험한 상황에서 휴대폰 긴급버튼을 눌러 경호회사 종합지령실로 구조요청을 하면 경호회사는 이를 GPS위성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를 10m 오차범위 내에서 찾아, 경호 차량에 경호원들이 탑승한 후 긴급출동하여 가입자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긴급버튼이 장착된 휴대폰을 구매한 후 휴대폰 사용요금 외 경호출동요금에 관련된 월정료를 지불해야한다.

러나 신변보호업체는 노·사간의 대립과 비도덕적인 업무 등에 투입되어 단기적인 고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표 2>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996년 경비업법에 신변보호업무가 추가되어 합법적인 민간경호시장이 열린 뒤 허가 등록된 업체가 5개4에 불과하던 국내 신변보호업체는 2006년도까지 360여개 업체로 증가하게 된다.

2009년도부터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더욱 신변보호업체를 운영하기에 어려워졌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전국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경호경비관련업무가 취소되어 업체들은 더욱 경영에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변보호업체들도 경호상품만을 고집하지는 않고,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경호상품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현 실정과 의뢰인의 욕구에 맞춘 경호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8차 개정(2001년 4월 7일)으로 인해 기계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가 신설되면서 경비업의 업무 종류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5종류로 분류되며, 2012년도까지 경비법인·허가업종 현황·경비원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민간경비의 법인·허가업종·경비원 현황

년도	법인 수	허가 업종별 현황						경비원 수
		업종 계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기계 경비	특수 경비	
2012	3,836	4,556	3,718	41	527	148	122	150,030
2011	3,651	4,381	3,529	45	540	152	115	146,286
2010	3,473	4,151	3,351	52	514	140	94	142,363
2009	3,270	3,906	3,144	50	489	139	84	146,805
2008	3,043	3,628	2,923	51	446	146	62	142,457
2007	2,834	3,387	2,728	52	416	138	55	135,400
2006	2,671	3,317	2,549	46	360	137	45	127,620
2005	2,515	2,957	2,401	44	334	138	40	122,327
2004	2,322	2,669	2,192	44	262	140	31	105,697
2003	2,163	2,496	2,031	53	217	159	36	104,872
2002	2,051	2,388	1,963	62	187	150	26	107,963
2001	1,929	2,224	1,874	41	154	134	21	97,117

자료 : 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2012년 12월 31일)

<표 2>의 업종계가 법인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 법인에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하여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등록 법인 수는 1,929개에서 3,836개 법인으로 1,907개 약 70% 이상 증가했으며, 업종 수는 전체 2,224개에서 4,556개 업종으로 2,332개 약 80%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업종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단연 시설경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호송경비 순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장 면에서 보았을 때 특수경비 약 350%, 신변보호 약 240%, 시설경비 약 80%, 호송경비 약 25%, 기계경비 약 4%로 특수경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개체 수를 비례했을 때, 특수경비 보다는 신변보호업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신변보호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과 민간경호원의 난립 및 용역계약 최저입찰 방식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여 대부분 영세업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 및 비도덕적인 업무까지도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신변보호업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며, 민간경비 발전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3. 신변보호 회사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1. 경비업체 과잉경쟁

현재 한국의 경호경비업체 중에 자금력이나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덤핑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민간경비 발전이나 다른 경호경비업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경비원에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저임금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가장 큰 저해요소이며, 이것은 곧 비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비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한 업체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미흡하게 되고, 이것은 곧 경비원이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소비

4) 한국경호경비시스템, 충용, 동양, 가드윈, 탐경

자는 불만을 가질 것이고, 계속되는 불만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약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업체의 이미지가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업체는 다시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무리한 덤핑입찰을 할 것이다[9]. 국내의 민간경호경비업체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며, 몇몇 대규모업체에서 전체 경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피드백을 이루면서 민간경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비업법 제7조 3항도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비업계의 뿌리 깊은 악법적 관행인 덤핑계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자질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수준 높은 경호·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며, 더불어 회사 이미지도 상승하여 계약금 및 계약금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3.2 관련 업무 추가운영

신변보호업무는 대부분 전자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어 과잉경쟁 현상이 더욱 초래되고 있다. 신변보호업무로는 회사를 경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변보호 업체들은 추가로 타 경비업무를 허가받아 운영하거나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민간조사 관련 업무들을 추가하여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민간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조사(탐정)는 선진국에서 경찰 및 민간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으며[12], 1997년 이후 국내에서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개방된 것을 계기로 외국의 관련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탐정소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진출하여 현재까지 약 34여개⁵⁾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개인의 관련된 기존의 조사업무 이외에 기업관련 조사업무, 금융관련조사업무, 보험관련조사업무, 의료관련조

사업무, 사이버관련조사업무, 교통사고관련조사업무, 지적재산권침해조사업무, 실종자관련조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조사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민간조사요원들의 75% 이상이 경찰 및 군인 그리고 경비회사 등이며, 총 민간조사요원 중 25%정도가 보디การ์ด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14], 한국의 민간경호경비업체에서 민간조사 관련 업무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아웃소싱과 시큐리티 컨설팅 업무를 추가 운영해야 한다. 아웃소싱은 기업변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호경비업계의 아웃소싱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일반적 업무 이외에 각종 특별행사 경비, 귀금속 호송경비, 장례식 호송, 운전업무, 비서업무 등 넓은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아웃소싱 업무를 추가 운영해야 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비대상시설의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자문하는 시큐리티 컨설팅업이 등장하였으며, 경호경비업체에서도 경영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경비자문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큐리티 컨설팅 업무를 추가 운영해야 한다[10].

3.3. 경비지도사의 선임기준 변경

현재 경호경비업체는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는데 이때 경비지도사의 선임은 필수 조건이며, 일정 인원의 경비원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자격증 임대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자격증 취득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비업법에 의해 경비업자가 실질적으로 경비지도사를 채용하도록 경찰서 생활안전계의 경호경비회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부분을 면밀히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 제도가 부담될 수 있다. 경호경비 현장의 상시근로자 및 회사 내 직원도 없는데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운영상 경비가 부담된다. 또한 신변보호업무의 입찰방식은 수의계약을 통해

5)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2010년 자료

덤핑되고 있으며, 시설경비업무의 입찰은 일정한 실적이 없다면 입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현상이 더욱 상승하고 있으므로 영세한 경호경비업체와 신규 설립되는 경호경비업체에게는 경비업법의 경비지도사 선임 필수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신입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상 경호경비회사에 근무한 자를 경비지도사에 준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영세한 경호경비회사에 적용해야한다. 위와 같이 일시적인 방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상향되면 경비지도사를 추후 선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경호경비업체의 대표를 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사업장이 분쟁지역의 경비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업체의 대표를 경비지도사의 일시적인 자격요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위와 같은 방안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무분별한 대여로 인해 분쟁지역에 항상 경비지도사가 배치되지 못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비지도사가 정상적으로 선임되어 근무를 하여도 경비업법상 분쟁지역에 항상 배치되어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등을 못하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사업장은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를 1명만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은 영세한 경영상황에서 추가로 경비지도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 경비지도사 업무들이 과중되어 있으며, 경비지도사가 한 지역에 상주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배치상 등의 관련 업무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지역의 경호경비업무에 경호경비업체의 대표가 경비지도사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

3.4. 마케팅 전략의 부재

최근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과 다양한 치안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변보호업체의 경영면에서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2004년 02월 10일 우리홈쇼핑에서 신변보호업체 이 지스가 하루에 8시간씩 다섯 차례에 걸쳐 경호를 받

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으며, 이 상품의 가격은 1백 25만원이었다. 그리고 경호원은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었으며, 경호의 종류로는 일반경호, 행사장 통합경호, 호송경호였다[17].

위와 같이 일부 신변보호업체에서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만 실제 계약체결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것은 실수요자를 생각하지 않은 마케팅이라 할 수 있으며, 경호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호의 특성상 고객이 상위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홈쇼핑을 보면서 경호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는 계산이다. 물론 예전과 비교했을 때 상품홍보를 위해 TV라는 매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케팅의 실패는 곧 바로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전문 마케터를 통해 특고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개성 있는 상품을 개발 및 투자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여성과 아동들에 관련한 범죄들과 문자마 범죄들까지 상승하고 있어 불안을 느끼는 대상자들은 신변보호 업체에 문의를 하지만 불특정한 시간에 보호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정된 시간이라도 출·퇴근이나, 등·하교에 관련한 보호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출·퇴근 및 아동들의 등·하교에 관련한 상품들과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한 경호출동서비스 등을 개발 및 투자해야한다.

3.5. 경비원 전문 자격제도 도입

현재 한국은 자격시험이 아닌 경비원 신입교육만 이수하면 경호경비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또한 관련 국가자격증으로 경비원을 지도·감독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자격기준과 경비원의 자격 기준이 동일하여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

일본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혼잡경비업무, 운반경비업무, 신변경비업무로 나누어져 있지만 공항보안업무, 시설경비업무, 혼잡경비업무, 교통유도업무, 핵연료물질 및 위험물 운반경비, 귀중품운반경비업무인

<표 3>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 허가기준

시설 등 업무별	자본금	경비 인력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업 무	5천만원 이상	20명 이상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복 및 장구 : 기 준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업 무	5천만원 이상	무술유단자 5인 이상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복 및 장구 : 기 준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통신장비

자료 :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영 제3조 제2항 관련)

6가지 종류의 검정제도를 실시하여 경비업무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11]. 독일의 경우 2002년 8월 1일부터 최초로 민간경비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법이 제공되었다. 직업교육법 25조에 따른 “경비 및 보안 근무를 위한 전문 자격 취득에 대한 직업교육령”이 2002년 7월 2일 제정되어,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정규 직업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5]. 또한 영국은 민간경비원 자격을 업무별로 7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현장직(front line)과 비현장직(non front line)으로 나누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20].

위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비원 자격검정 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변보호 업무, 시설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국가자격제도를 각각 신설하여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관련 직종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에 맞게 자격기준을 강화한 후 실무 위주의 검정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시험 면제 관련 사항도 추가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격기준, 시험과목, 시험방법, 면제사항 등을 경비지도사 시험보다는 완화하거나 시험 난이도를 낮춰 각 업무별로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항목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실용화·민영화 정책에 따라 당장에 국가자격제도의 실시는 어려울 것이기에 1997년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에서 출발하여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7].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경호·경비 관련 민간 자격증은 다양한 명칭과 검정방식을 통해 여러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사)한국경비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가장 높다. 그것은 자격관리자인 (사)한국경비협회가 법정단체로서 2,000개가 넘는 회원사를 가지고 있으며, 4,000명이 넘는 자격취득자들이 있어 민간경비 노동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 또한 2012년 12월 10일 민간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되어 2013년부터 공인화된 자격으로 시행되고 있어 더욱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한국경비협회는 ‘신변보호사’ 자격을 국가자격제도로 승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3.6. 경비회사 설립 허가요건

현행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해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경비업의 허가기준은 사전적·사후적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다[10].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 현행 허가 기준은 <표 3>와 같으며, 강도 높은 시설경비업무에 투입되는 업체들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로 배치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변보호업체들은 <표 3>와 같은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고 두 가지 업무를 허가 받아야한다. 신변보호업체 설립의 허가기준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업체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 업체들은 단기적이고 고수익을 위해 노·사간의 대립과 스트라이크 현장 및 비도덕적인 업무에 경호원들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비업법에 의해 업체가 업무정지 또는 폐업이 되더라도 또다시 타인의 명의로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업체들은 비도덕적인 업무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입하게 된다.

또한 허가 신청 당시 은행잔고 증명서만 심사하므로 급전을 이용해 자본금 증명을 제출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세업체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19].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조항을 특수경비업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신변보호업체 설립 이후 자본금을 1년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 진다면 비도덕적인 업무에 쉽게 투입되지 않을 것이며, 투입되어 폐업이 되더라도 신규설립에 부담을 느껴 영세한 업체들이 추가로 양산되는 현상까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업체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정해야 한다. 현행 경비업법상 교육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교육장소 확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추후 경호경비업체 설립 허가 담당부서인 경찰청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 사무실에 임시로 일부 공간을 마련하거나 다른 장소에 교육공간을 잠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통신장비 기준은 수량과 성능에 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통신장비를 임대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생활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경호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경호원들에게 통신장비가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규모 행사에 경호원 투입되는 경우에는 일부 경호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소규모 행사에도 일부 경호원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장비 수량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경비

인력 수 분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 신변보호업체 설립 시 경호현장 성격에 따라 신변보호업무 또는 시설경비업무로 관할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해야 되므로 대부분 업체들은 신변보호와 시설경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변보호와 시설경비 기준인력인 25명분의 통신장비를 구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신장비 성능의 기준은 생활무전기 보다는 업무용무전기로 제한해야 한다.

4. 결론

우리나라는 1976년 12월 31일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었으며, 경비업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15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질·양적 점차 발전하여 2012년까지 3,836개의 민간경비회사와 150,030명의 민간경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민간경호경비의 영역이 범외방 차원을 뛰어넘어 종합적인 서비스로서 급격히 변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민간경호경비가 고도의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정비할 시점이라 사료되어 한국의 신변보호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착수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로서 민간경비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논문, 학술지 연구자료, 단행본 등을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경비 관련 통계자료 및 보도 내용들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 경비업체들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덤핑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덤핑현상으로 인해 경비원들에게 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경비원들의 교육 및 훈련이 미흡하여 경비원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호경비업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자질향상과 능력을 배양하고 수준 높은 경호·경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호전문업체에서는 민간조사 관련업무, 아웃소싱과 시큐리티 컨설팅 등으로 영역을 추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경호경비업체에서는 경비지도사를 필수로 선임해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에서는 공공연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호경비업체의 경비지도사 선임기준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신변보호업체의 경영면에서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 마케터를 통해 특고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 및 투자해야 한다.

네 번째,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경비원 자격검정 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경비업무별로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자격 취득자에게 관련 직종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에 맞게 자격기준을 강화한 후 실무 위주의 검정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시험 면제 관련 사항도 추가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경호경비업체의 법인 설립 허가기준은 사전적·사후적 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민간경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1년 이상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장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업체에게만 허가해야 하며, 신변보호 및 시설경비업무를 허가 받고자 할 때 업무용 무전기 25대로 변경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하루아침에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아간다면, 국민의 안전을 충족시키는 신변보호업으로 거듭나 더욱더 질적·양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과제로는 민간경비 산업시장이 활성화되므로 인해 자본력에서 대기업과 격차가 있는 영세업자들을 위한 운영 실태와 경영상의 전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경찰신문, “용역회사 경호까지 책임집니다”, 04, 25, 1985.
- [2] 공배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제7권, 제2호, p.52, 2010.
- [3] 김남중, “대학교 경호학과 및 경호 관련 교육단체들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제12권, 제2호, p.96, 2012.
- [4] 김정환·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서울 : 백산출판사, p.365-366, 2009.
- [5]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136, 2004.
- [6] 김진,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제도적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24, 2005.
- [7] 김태민·강영길, “한국 경비원 관리자제도의 발전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제6권, 제11호, p.182, 2009.
- [8] 김태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시스템에 관한 연구”, 제7권, 제1호, p.260, 2010.
- [9] 김태환·박옥철,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9호, p.78-79, 2005.
- [10] 박준석, “민간경호·경비산업론”, 서울 : 백산출판사, p.288, 2006.
- [11] 이민형·강경수·김진환, “현행 경비업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한국치안행정학회, 제5권 제1호, p.137, 2008.
- [12] 이상원,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7권, p.236, 2007.
- [13] 이상철·홍은선, “민간경비와 경찰의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제4권, 제1호, p.233, 2007.
- [14] 임명순,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제11권, p.118, 2008.
- [15] 장명진, “경호실무”, 서울 : 법연출판사, p.36-37, 2004.
- [16] 정진환, “한국 시큐리티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제2권 제1호, p.13, 2008.
- [17] 중앙일보, “경호상품 홈쇼핑 등장”, 02, 10, 2004.
- [18] 중앙일보, “용역경비업체 요인경호까지 영역확대 모색”, 04, 25, 1985.
- [19] 최정택, “경호학개론”, 서울 : 진영사, p.235, 2010.
- [20] 최정택, “민간경비 자격검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8권, p.151, 2009.

[저 자 소 개]



박 장 규(Jang-Gyu Park)

1973년 3월 원광대학교학사
1990년 3월 우석대학교석사
2006년 8월 전주대학교박사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교수

email : 2009245@naver.com



김 남 중(Nam-Joong Kim)

2003년 3월 전주대학교학사
2006년 2월 단국대학교 석사
2010년 8월 전주대학교박사
사단법인 대한경호협회 전주지부장

email : jamsaco@hanmail.net